

‘11년 6월 15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신산업표준과 안종일 과장, 구창환 연구사(509-7294)
전자산업과 엄찬왕 과장, 정승혜 사무관(2110-5676)

LED조명, KS인증부담 대폭 줄인다

- 안전인증(KC)의 중복시험 면제, KS 인증비용 및 기간 1/2로 ... -

□ LED 조명관련 중소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‘11년도 정부규제개혁과제의 하나인 인증부담 경감을 위해 지식경제부(최중경 장관)에서는 **인증비용 경감과 인증기간 단축내용**을 포함하는 KS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발표하였음

* ‘2011년도 정부 규제개혁 추진계획’, LED 인증절차 간소화(‘11.1)

○ 그 동안 KS인증의 경우 품목당 300 만원 이상 하는 시험비용과 2 개월 이상의 인증소요기간의 중소기업 고충에 대해 언론 보도와 기업현장애로사항으로 제기되어 왔음

□ ‘LED 산업 제2도약전략’(지식경제부 발표, ‘11.5) 중 동반성장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이번LED 관련 KS인증심사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

○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KC인증을 획득한 LED 조명제품을 대상으로, 관공서 납품 또는 홍보수단 등으로 KS 인증을 신청할 시,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 인증비용과 인증기간을 대폭 경감시키는 것임

- * KS :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기준이상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임의인증
- * KC :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KC기준 이상의 안전요구사항을 의무화한 강제인증

- KS, KC 兩 제도 간의 안전요구수준, 시험내용을 고려하여 면제항목을 도출하되, 소비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만은 제외되지 않도록 KS인증심사기준에 면제조항을 삽입하여 6.15부터 본격 시행됨
- * 대상(5품목) : LED(컨버터내장형, 매입형 및 고정형, 이동형, 센서등, 모듈컨버터)
- * 면제요건 :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1년 이내의 최초 KC 인증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KS인증 심사시 심사기준에 명시한 중복시험을 면제
- * 시험항목 KC(안전, 10 ~13)와KS(안전+성능, 17 ~20)의 시험항목 중 7 ~10개가 중복

□ KC 안전성관련 중복시험 항목의 면제로 인해 KS인증심사시 제품검사 시험수수료가 대폭 경감되고, KS인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약 2 개월에서 1 개월로 단축됨

《면제효과》

- ◆ 시험수수료 : 280 ~ 350만원 → 100 ~ 150만원(50 ~ 70 % 절감 효과)
- ◆ 시험기간 : 약 2 개월 → 1 개월 이내 (50 % 단축효과)

□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KS인증 획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향후 보급될 LED 조명제품의 KS기준들도 KC와의 중복시험 면제내용을 포함하여 제정할 계획임

[붙임] LED 조명제품 KS 및 KC 제도 간 중복현황

□ 중복품목 현황(5품목)

LED (KS, KC) 중복품목	KS항목	KC항목	중복항목 (면제대상)
KS C 7651 -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	17	10	7
KS C 7653 -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	19	13	8
KS C 7655 - LED 모듈 전원장치용 컨버터	20	14	10
KS C 7656 - 이동형 LED 등기구	20	13	8
KS C 7657 - LED 센서 등기구	19	13	8

□ 주요 중복 시험항목

구 분	시 험 항 목
안전항목	연면거리, 공간거리
	접지
	나사 단자
	나사 없는 단자
	기계적 강도
	내열성
	내화성
	고장상태조건
	전기자기적합성